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67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 엄태영 · 조지연 · 이달희

권영진 • 유상범 • 서천호

조경태 • 구자근 • 정점식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 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 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 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 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 한 세액공제) ① -----2 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027년 12월 31일-----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 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 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 이라 한다)이 <u>2024년 12월 31</u> -----2027년 12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 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 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 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sim	5	(생	략)
Ι.		U.	(6)	- $+$ 1

② ~ ⑤ (생 략)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혀해과 간음)